

釜山大學校
韓醫學專門大學院
學生會則

제정 : 2009년 3월

1차 개정 : 2017년 9월 4일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학생회(이하 본회라 함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 및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과학화, 표준화, 세계화에 기여하고, 자유로운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의료인을 육성하고 본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추진하여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조 (회원의 구성) 본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전체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 (단, 휴학, 정학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자격을 정지한다.)

제 4조 (권리와 의무)

제 1항: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제 2항: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5조 (조직)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, 학생회장 및 부회장, 대의원회, 운영위원회, 자치기구를 둔다.

제 6조 제 5조에 규정된 각 기구의 임원은 회원 전체에 대하여 성실히 봉사할 의무를 지니며, 모든 자치활동에 책임을 진다.

제 2장 학생총회

제 7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

제 8조 (지위)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 9조 (의장)

제 1항: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

단, 학생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2항: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모두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직을 대행한다.

제 10조 (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제 1항: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본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

제 2항: 임시총회는 학생회장, 운영위원, 대의원회 또는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
제 3항: 학생총회 소집 시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전항(제 10조 제 2항)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 11조 (업무 및 권한)

- 제 1항: 본회는 학생회장 선출권을 갖는다.
- 제 2항: 본회의 결산, 활동계획 및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.
- 제 3항: 본회는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- 제 4항: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갖는다.
- 제 5항: 본회는 학교 당국 및 관계자의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.
- 제 6항: 본회는 기타 총회의 토의 및 의결권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본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

제 3장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
제 13조 (지위)

- 제 1항: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제 2항: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(闕位)시 그 직을 대행한다.

제 14조 (임기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년도의 익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5조 (선출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선거시행 세칙에 의하여 선출한다.

제 16조 (업무 및 권한)

- 제 1항: 학생회장은 자치기구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을 임명한다.
- 제 2항: 학생회장은 학생총회, 운영위원회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제 3항: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출석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.
- 제 4항: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.
- 제 5항: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의 탄핵 발의권을 갖는다.
- 제 6항: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시 자치기구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 7항: 학생회장은 업무상 필요시 자문 기구 및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단, 특별기구는 그 업무가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.
- 제 8항: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- 제 9항: 학생회장은 집행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 4장 대의원회

제 17조 (지위)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.

제 18조 (구성) 대의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,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, 학·석사 통합과정을 포함한 각 학년 대표(석사 4학년의 경우, 부학년 대표 포함)로 구성된다.

제 19조 (업무 및 권한) 본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다.

제 20조 (의결) 재적 인원 1/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운영위원회 임원 유고시 해당학년의 다른 인원에게 위임을 통해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찬반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제 21조 (소집)

제 1항: 대의원회의 개최는 정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.

제 2항: 특별 대의원회의 개최는 대의원회 인원 1/2의 연서에 의하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.

제 5장 운영위원회

제 22조 (지위)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.

제 23조 (구성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총무부장, 학술부장, 기획부장, 자치기구장으로 구성한다.

제 24조 (업무 및 권한)

제 1항: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제반사항을 검토, 조정, 집행한다.

제 2항: 운영위원회는 기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25조 (소집)

제 1항: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제 2항: 전체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한다.

제 3항: 전체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.

제6장 자치기구

제 26조 (지위) 자치기구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본회 회원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기구이다.

제 27조 (구성)

제 1항: 동아리연합회,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로 구성된다.

제 2항: 새로운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.

제 28조 (업무 및 권한)

제 1항 : 사업 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를 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.

제 2항 : 본회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.

제 7장 동아리 연합회

제 29조 (목적) 동아리 연합회는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대학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학생들의 모임인 동아리들의 모임으로써 전 동아리 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, 학과 학생들의 꿈과 이상과 취미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회는 각 동아리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.

제 30조 (지위) 본 대학 내의 각 동아리 간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정 의결하는 동아리 최고 자치기구이다.

제 31조 (구성 및 운영) 본회는 동아리 연합회장, 각 동아리 회장, 각 동아리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다. 운영은 동아리 연합회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.

제 32조 (회장)

제 1항: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한다.

제 2항: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, 주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제 33조 (업무 및 권한)

제 1항: 동아리 소개, 등록, 동아리방 배정 등 공동문제를 해결한다.

제 2항: 기타세부사항은 동아리 연합회의 내규에 의한다.

제 8장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

제 34조 (지위)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는 학·석사통합과정의 최고 학생 자치기구이다.

제 35조 (구성)

제 1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는 학·석사통합과정 학사 1, 2, 3학년 재학생 전체로 구성한다.

제 2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 운영위원은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총무부장, 학술부장, 기획부장 등으로 구성한다.

제 3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은 업무상 필요시 자문 기구 및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단, 특별기구는 그 업무가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.

제 4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 각 부서의 장은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임의로 구성 할 수 있다.

제 36조 (선거)

제 1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·석사통합과정 학사 1, 2, 3학년 재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.

제 2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의 전 과정에서 하나로 참여하고 학사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.

제 3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

제 4항: 단독 출마 시에는 학사 재적인원 2/3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 37조 (업무 및 권한)

- 제 1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 활동을 자치적으로 수행한다.
- 제 2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칙을 따른다.
- 제 3항: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장은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된다.

제 38조 (조직과 회칙)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는 본회의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조직과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
제 39조 (재정 및 보고) 학·석사통합과정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제출 및 심의를 받는다.

제 9장 재정

제 40조 (재원)

- 제 1항: 본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
- 제 2항: 자치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 41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2조 (예산집행)

- 제 1항: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 2항: 예산 집행 시 지출된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3조 (결산) 각 자치기구는 매학기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제 10장 선거

제 44조 (학생회장, 부회장의 선거)

- 제 1항: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자는 한의학과 재학생 40인 이상의 연서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.
- 제 2항: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의 전 과정에서 하나로 참여하고 학생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.

제 45조 (단독출마) 단독출마 시에는 재적인원 2/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 46조 (선출시기) 11월 마지막주 월요일 한의학과 전학년 재학생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.

제 47조 (입후보 자격) 당해 한의학과 석사과정 1학년 학생만 입후보 할 수 있다.

제 48조 (선거권) 본회의 회원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.

제 49조 (선거방법)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의 4대 원칙에 의한다.

제 50조 (선거 시행 세칙)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의한다.

제 11장 의결

제 51조 (의결) 본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장 회칙 개정

제 52조 (발안 및 공고)

제 1항: 본회의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발안되고 개정안을 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항: 학생회장은 개정안을 접수한 즉시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3조 (의결)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학생총회에 상정하여 공개토론을 거쳐 의결한다.

제 54조 (공포) 학생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

제 13장 부칙

제 55조 본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56조 본회칙에 의거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.

붙임:선거시행세칙

(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선거)

제 1장 선거권, 피선거권

제 1조 (선거권) 선거권은 본회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.

제 2조 (피선거권) 학생회칙 제 4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

제 3조 (선거방법) 모든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의 4대원칙에 준한다.

제 4조 (선거일 공고)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선거 비용)

제 1항: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위원회가 부담한다.

제 2항: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지급한다.

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 6조 (구성)

제 1항: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함.)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대의원회원, 각 학년 대표로 구성된다. 단, 입후보 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.

제 2항: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되고 위원회 임무를 총괄한다.

제 3항: 학생회장 보궐선거 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다.

제 7조 (업무 및 권한)

제 1항: 본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 및 집행한다.

제 2항: 위원회는 선거일 4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3항: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다.

제 4항: 기타 제반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제 8조 선거 운동 방법에 관한 기타의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 3장 입후보

제 9조 (입후보 등록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원서에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(11월 둘째주 월요일)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입후보기간 내에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입후보등록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0조 (입후보자 마감)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통고하여야 한다.

제 1항: 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.

제 2항: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게 하고 등록 마감 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무효 처리한다.

제 11조 (입후보자 공고) 입후보자 자격 심사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장 선거운동

제 12조 (선거운동기간) 입후보자 명단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전까지로 한다.

제 13조 (합동 소견 발표)

제 1항: 위원장은 입후보자를 위하여 각 학년에서 1회의 소견 발표를 한 후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한다.

제 2항: 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시간을 미리 정하여 통고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홍보물) 홍보물은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, 내용, 매수 및 장소에 따라야 한다.

제 15조 (선거운동제한)

제 1항: 일체의 향응 및 금품제공을 금한다.

제 2항: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선거 분위기 문란 행위를 금한다.

제 5장 투표

제 16조 (방법) 선거권자는 투표 시 학생증 제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17조 (투표소 설치)

제 1항: 투표소는 교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2항: 투표소 출입은 위원회 위원과 투표인으로 제한한다.

제 18조 (투표시간)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6장 개표

제 19조 (개표개시)

제 1항: 투표완료 후 즉시 개표하며 투표함의 봉인을 조사한 후 투표함을 열어야 한다.

제 2항: 개표 시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/3이상이 참석해야 한다.

제 20조 (개표소 설치) 개표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.

제 21조 (개표 참관) 입후보자 및 투표인은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.

제 22조 (무효투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- 제 1항: 위원회에서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.
- 제 2항: 투표자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것.
- 제 3항: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.
- 제 4항: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기입한 것.

제 23조 (개표중지): 참관인은 개표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개표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
제 7장 보궐선거

제 24조 (보궐선거) 학생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 1항: 학생회장 당선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, 위원회의 책임 하에 재선거를 가지며, 기존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학생회장이 당선된 이후 해산한다.
- 제 2항: 제 1항 이외의 경우,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직을 맡게 되며,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승계 또는 재구성 할 수 있다. 이때,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한다.
- 제 3항: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, 학기 중 2주 이내에 대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선거를 갖는다.

제 8장 벌칙

제 25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)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.

- 제 1항: 위원회 및 개인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.
- 제 2항: 집회 연설 및 홍보물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자.
- 제 3항: 기타 선거 시행 세칙을 위반한 자.

제 26조 (입후보자 등록 취소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.

- 제 1항: 추천서를 부정하게 작성한 자.
- 제 2항: 부정 선거 운동을 한 자.
- 제 3항: 위원회의 지시에 불복한 자.
- 제 4항: 기타 선거 시행 세칙에 위배되는 자.

제 27조 (처벌에 관한 규정) 위원회가 선거시행세칙 제 25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때는 재적위원 2/3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장 학년대표 선출

제 28조 (학년대표 선출) 학년대표는 2학기 마지막 시험이 끝난 후, 학년별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.

제 1항: 현 학년대표의 진행을 통해 다음 학년대표의 선거가 진행된다.

제 2항: 단일 후보 출마시 해당학년 재적인원의 2/3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.

제 3항: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해당학년 재적인원의 2/3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으로 인정한다.

제 4항: 공인된 투표용지를 통해서 얻은 득표만 유효표로 인정한다.

제 5항: 1학년 학년대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에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.